

의안번호	2215973
의 퇴 인	강명구 의원
회 답 일	2026.3.20.
추계번호	26B01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후단 삭제>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의무·재량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제6항 신설)	의무규정
		제2항 및 제6항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2의2호 신설) 2의2. 제32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전에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8조(과 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전에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교육 내용과 전문기관 위탁 요건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대상자의 규모, 교육 내용,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